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

2. 보험상품의 명칭 : 세이프플러스상해보험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등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계약의 경우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다. 가입연령 : 보험나이 15세~65세.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하지 아니한다.
   다. 보험료의 반환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약관대출 : 회사는 약관 대출을 하지 않는다.
   마. 보험 종목의 변경 :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바. 보험상품종류 : 1형(리볼빙결제형), 2형(비리볼빙결제형)
   사. 위 상품은 개별계약으로 운용한다.
   아.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하며 보험만기는 8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질병위험특별약관 Ⅰ의 악성암 보장의 경우 면책기간은 90일로 하며 피보험자가 만15세미만인 경우 면책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
   차. 회사는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다.

카.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경우 2012년 4월 1일부터 신규 계약 판매 중지(단, 이전 기간 동안 자동갱신 특별약관이 포함된 계약은 예외로 함)

타. 일반상해 5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받거나,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2025년 12월의 보험개발원 공시 연평균 정기예금이율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파.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시, 회사가 채무소멸 여부를 확인한다.

하.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다.

거.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2)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기타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